

자녀사랑맞춤지급특약 약관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사망보험금분할지급금에 관한 사항

제4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5조 대표자의 지정 특칙

제6조 사망보험금분할지급금 등의 지급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8조 가입자녀의 범위 및 자격의 취득

제9조 특약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10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1조 회사의 보장개시

제12조 특약의 보험료

제13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5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자녀사랑맞춤지급특약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이 특약이 부가된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사망보험금을 분할하여, 이 특약의 사망보험금분할지급금을 받는자(이하 '가입자녀'라 합니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사망보험금분할지급금에 관한 사항]

(1) 사망보험금분할지급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제 9 조 [특약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 2 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분할지급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동조 제 4 항에서 정한 분할지급기간동안 나누어 매년 사망보험금 청구해당일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 년 후에 분할지급이 개시됩니다.

(2) 사망보험금분할지급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지급금을 제 4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 1 항에 따른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분할지급금 기준금액 예시】

- 사망보험금액/보험기간

주계약: 1 억원/종신, 정기특약 1: 3,000 만원/70 세만기, 정기특약 2: 2,000 만원/60 세만기

- 보험수익자 : 가입자녀 1인
- 사망보험금 분할비율: 40%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에 따른 사망보험금분할지급 기준 금액

~ 59 세: 6,000 만원, 60 세 ~ 69 세: 5,200 만원, 70 세~: 4,000 만원

제4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1) 이 특약의 분할지급기간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사망보험금 청구해당일이 속한 달의 공시이율로 하여 사망보험금 청구일로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사망보험금 청구일로부터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0%, 경과기간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 0.75%, 경과기간 10년이상 연복리 0.50%를 적용합니다.
- (2) 제 1 항의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3) 회사는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며, 계약자에게 연 1 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 내역을 알려 드립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사망보험금 청구일로부터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0%, 경과기간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 0.75%, 경과기간 10년이상 연복리 0.50%)로 적립됩니다.

제5조 [대표자의 지정 특칙]

주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가입자녀에게는 주계약 약관의 [대표자의 지정]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제 9 조 [특약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 5 항에 따라 이 특약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6조 [사망보험금분할지급금 등의 지급]

- (1) 회사는 사망보험금분할지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별도의 청구 없이 가입자녀에게 사망보험금분할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2) 제 1 항에 따라 사망보험금분할지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망보험금 청구해당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청구해당일의 다음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공시이율 + 1.5%
 2. 청구해당일의 31 일 이후부터 60 일 이내 기간: 공시이율 + 1.5% + 가산이율(4.0%)
 3. 청구해당일의 61 일 이후부터 90 일 이내 기간: 공시이율 + 1.5% + 가산이율(6.0%)
 4. 청구해당일의 91 일 이후 기간: 공시이율 + 1.5% + 가산이율(8.0%)
-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망보험금분할지급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1)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3)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단, 주계약에 부가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 중 사망보장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사망보장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제8조 [가입자녀의 범위 및 자격의 취득]

- (1) 가입자녀는 사망시 보험수익자 중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또는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으로 합니다. 단, 이 조건에 해당하는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가입자녀로 할 수 있습니다.
- (2)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한 후 제 1 항의 가입자녀에 해당되는 자는 가입자녀로 지정 또는 변경되는 날에 가입자녀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제9조 [특약의 신청에 관한 사항]

- (1) 주계약의 계약자는 이 특약의 신청시 주계약의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가입자녀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2) 주계약의 계약자는 가입자녀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중 분할되어 지급되는 비율(이하 “분할지급비율”이라

합니다)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분할지급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단, 분할지급비율은 10%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 제 2 항의 사망보험금은 주계약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사망보험금 중 가입자녀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주계약의 계약자는 가입자녀 나이 20 세, 25 세, 30 세 중에서 분할지급 종료나이를 선택하여야 하며, 분할지급 종료나이는 만 나이로 합니다. 분할지급기간은 분할지급 종료나이에서 사망보험금 청구시의 가입자녀의 만 나이를 뺀 기간을 말합니다.

【분할지급기간 예시】

- 자녀생일: 2001 년 1 월 1 일, 분할지급종료나이: 25 세, 사망보험금 분할비율: 40%
- 사망보험금 청구일: 2019 년 7 월 1 일(자녀 만나이 18 세), 사망보험금: 1 억원
- ※ 분할지급기간 = 분할지급종료나이(25) - 사망보험금 청구일의 자녀 만나이(18) = 7 년
- 사망보험금 청구해당일: 7 월 1 일

1 억원*(100%-40%)	1 회 분할지급금	7 회 분할지급금
일시금(6 천만원) 지급	지급	지급(최종)

2019.7.1(18 세)	2020.7.1(19 세)		2026.7.1(25 세)
----------------	----------------	-------	----------------

- (5) 이 특약을 신청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자녀에 대해서는 이 특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사망보험금 청구시 가입자녀의 나이가 이 특약 신청시 정한 분할지급 종료나이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2. 이 특약 신청 후 가입자녀가 사망하거나 사망시 보험수익자에서 제외된 경우

제10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녀, 분할지급비율 및 분할지급 종료나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11조 [회사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 7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2조 [특약의 보험료]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13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3)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 11 조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5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 6 관 기타사항 등

제15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